

서식 IV-9 겸직허가 시행안

경기도○○교육지원청

수신자 ○○중학교장

(경 유)

제 목 교육공무원 겸직 허가

-
1. 관련: - (20**.**.**.)
 2.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및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겸직을 허가합니다.

가. 겸직허가 대상자 및 내용

소속	직위	성명	생년월일	겸직기관	겸직직급	겸직허가기간	비 고
○○중학교	교장	○○○	*****	□□대학교	강사	20**.**.**. - 20**.**.**.	

나. 유의 사항

- 1)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,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,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승인이 자동 소멸됨
- 2)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는 연가(조퇴, 외출 등)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.(환산기준 : 1일 8시간) 끝.

경기도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

수신자

전결 **/**

장학사

○○과장

○○국장

시행 ○○과-

(20**.**.**.)

접수

우

/

전화

전송

/

/ 비공개(6)